

【 국내금융 뉴스 】

금융당국, 장애인 보험가입 거절 시 인권위 고발

- 금융당국은 지난 19일 생·손보사 계약심사 담당임원 36명을 소집하여 장애인 및 장기기증자에 대해 보험가입 시 차별을 두지 않도록 독려하는 한편, 보험인수 거부 시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는 입장임.
- 부당한 보험가입 거절 등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소지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시정하거나 인권위에 고발 조치할 예정임.
 -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 불이행시 3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, 그 이전 금융감독 차원에서 해당회사 및 행위자에 대해 엄중 문책한다는 방침임.
- 장기기증자에 대해서도 비합리적 인수기준을 적용하여 관련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인수기준 시정 요구 및 해당 회사의 중점 검사사항에 반영한다는 계획임.
 - 비합리적 인수기준이라 함은 통상 골수기증자는 1개월이 경과하면 골수가 회복되고 의학적으로 후유증 여부가 판별되나, 기증 후 보험가입이 가능한 경과기간을 지나치게 길게 설정하는 경우 등을 말함.
- 향후 금융당국은 생·손보 협회를 중심으로 장애인 및 장기기증자의 보험가입 차별 방지를 위한 홍보·교육활동을 강화하고 신고센터를 설치·운영할 계획임.
 - 보험설계사 시험 시 장애인 및 장기기증자에 대한 차별금지 문항을 출제하는 등 보험설계사 교육을 강화할 예정임.
 - 동시에 생·손보 협회와 개별회사의 모집조직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, 합리적이고 적절한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은 회사에 대해 관련 임원 사유서 징구 및 재교육 실시 등을 요구할 계획임.

(장애인 및 장기기증자에 대한 보험가입 차별금지 독려, 금융위원회 보험과-금융감독원 보험계리연금실, 5/20)